

보도 일시	2022. 4. 6.(수) 10:00	배포 일시	2022. 4. 6.(수) 08:30
담당 부서	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	책임자	과 장 박세민 (044-200-4583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아 (044-200-4585)

##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 실시

### - 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, 납품단가 조정실태 등 긴급 점검 -

-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공정위)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·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.
-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.
  -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,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, 원사업자에게는 조정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
  -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.
-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조항의 계약서 반영여부, 실제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중점 조사하여 현 상황을 진단·분석하고,
  -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,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‘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’ 으로 선정·발표할 예정이다.

#### <실태조사 개요>

- ▶(조사기간) 2022. 4. 6. ~ 5. 6.(필요시 연장)
- ▶(조사대상)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·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
- ▶(조사내용) 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,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, 실제 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활용 실태 등 중점 조사

## 1

### 조사배경

□ 코로나19 및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의 가격 급등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.

\* 산업부 발표 원자재가격 동향에서 '22.3월 니켈가격은 전년대비 80%, 나프타가격은 60% 이상 상승

□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직접 또는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.

○ 또한 원사업자에게는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, 단가 조정을 요청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.

○ 이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.

□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납품단가의 조정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,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수급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.

## 2

### 조사개요

□ (조사기간·대상) 4월 6일부터 한 달간 실시 예정으로,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\*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·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 개를 대상으로 한다.

\* 철강류, 비철금속(알루미늄, 구리, 니켈 등), 석유화학(원유, 나프타 등), 제지류 등

- (조사내용)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,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,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,
  -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, 그러한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.
  - 또한 이번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정위 누리집([www.ftc.go.kr](http://www.ftc.go.kr)) - “공정위에 익명 제보하기\*” 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였다.

\* 제보자의 아이피(IP)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으며, 제보된 사건의 조사·처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·운영함

### 3 조사결과 활용

-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.
  - 또한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‘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’ 으로 선정·발표할 예정이다.